



의안번호	제 2019 - 4호
의 결 연 월 일	2019. 1. 14. (제92차 정기회의)

의
결
안
건

유사수신 행위범위반범죄
양형기준안 확정 의 건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1. 의결 주문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6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인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확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 조희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별지와 같음

[별지]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 양형기준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은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약어표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사수신행위법

II. 형종 및 형량의 기준¹⁾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비조직적 범행	-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조직적 범행	- 10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2유형)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u>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²⁾</u>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u>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³⁾</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⁴⁾</u>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u>일부 피해회복⁵⁾</u> ○ 일반적 수사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92차 전체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하자는 의견 있음

[유형의 정의]

1. 비조직적 범행

-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수신행위

2. 조직적 범행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유사수신행위범위반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함

3) 명칭변경하자는 의견 있음

4) 인자에서 제외하자는 의견 있음

5) 상당금액 공탁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변경하자는 의견 있음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고지된 사업내용이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실현가능성을 신뢰하여 피고인 자신도 투자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단순가담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다.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금원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이 매우 큰 경우
 - 투자자의 수가 매우 많거나 다수의 영업장을 두고 장기간 영업을 계속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유사수신 총액을 기준으로 약 2/3 이상의 금액에 관해 투자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거나 투자자의 피해가 회복 또는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전파성이 높은 매체는 인터넷[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의미한다.

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⁶⁾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⁷⁾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가담 ○ <u>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⁸⁾</u> ○ 자수 또는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일반적 수사협조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u>일부 피해회복⁹⁾</u>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6) 제92차 전체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7) 2유형에 제한하자는 견해와 모든 유형에 적용하자는 견해가 있음

8) 양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적용하자는 견해 있음

9) 상당금액 공탁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변경하자는 의견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